

2020년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4.(금), 14:00 ~ 17: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7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김경숙, 김연희, 김택수, 노정동, 박재화, 박정인, 백대용, 신창환, 심장섭, 오영주, 위정현, 윤종수, 임형주, 최승수, 최현용,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0-2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보고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 사무처장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소개 및 2021년 주요 계획	
· 2020년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4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 사무처장	
<논의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반복침해자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방안	
· 제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제척사유 당사자 포함여부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 2020년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소개 및 2021년 주요 계획 보고
- 2020년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보고

2.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0-162508호(순번 1번)는 제2분과위원회(2020. 11. 10. 개최, 제2020-293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을 제공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162509호, 162510호(순번 2번, 3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12. 2. 개최, 제2020-330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신문기사 내 이미지를 무단 복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신문기사 내 이미지에 대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0-162508호(순번 1번)는 자막 파일이 무료 제공되고 있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 저작물의 권리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저작권은 사적 권리이며, 저작권법위반죄가 기본적으로 친고죄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 저작물의 권리가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0-162509호, 162510호(순번 2번, 3번)는 시정권고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이용 및 확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168개 계정에 대해 28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전 중 중복 청구(모바일 웹하드)된 14개 온라인서비스의 80개 계정과 폐쇄된 2개 온라인서비스의 6개 계정은 부결하고 그 외 12개 온라인서비스의 82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 청구인이 제출한 △△△△△△△△△△△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권리주장 저작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20. 11. 23. 개최, 제2020-51회), 제2분과위원회(2020. 11. 24. 개최, 제2020-52회), 제3분과위원회(2020. 11. 25. 개최, 제2020-53회)가 결정한 44개 안건(계정) 심의

- 회의결과

- ♠♠♠♠♠ 및 ♠♠♠♠♠의 다른 참여자들과 저작재산권자로 주장된 자 간 저작재산권 및 배급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미제출 건, ▲▲▲▲▲▲▲▲▲▲▲ 중 △△△△△△△△△△ 정보 및 ▽▽▽▽▽▽▽▽▽▽ 발급 ♠♠♠♠♠♠♠의 각 소명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건, 제출된 소명자료에 서명한 날짜·작성명의인·직위가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은 건 등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44개 계정 모두 부결함

○ 제4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저작권법 개정(2020. 5. 27. 시행)에 따라 제4조와 제5조를 법과 동일하게 변경이 필요함

- 제8조 제목 오기 수정이 필요함
- 제13조 제3항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 회의결과

- 만장일치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가결함

3. 논의안건

○ 제1호: 반복침해자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방안

- 주요내용

- 반복침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반복되는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에서 나아가 게시판 정지 및 포털 이용자에 대한 계정정지 방안, 보호원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 제21조에 의한 수사요청의 권고 등 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4분과위원회(2020. 11. 26. 개최, 제2020-319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사안임.

- 회의결과

- ‘포털사이트 계정 정지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으로 결정함

○ 제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제척사유 당사자 포함여부

- 주요내용

- ‘당사자’에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가 공정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척 사유 고지 여부에 대해 제4분과위원회(2020. 11. 26. 개최, 제2020-319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가 공정한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제척 사유를 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회의록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고 계정정지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 신고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계정정지 시정권고 회의 부분인 14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보고안건

o 2020년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정성희 사무처장이 2020년 심의 현황과 주요 심의사항을 보고함.

4.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안건번호는 제 2020-162508호~16251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2508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 대상 게시물의 영상 저작물인 '☆☆☆☆'의 시리즈물로 일본에서는 2020. 10. 3.부터 방영 중이고 한국에서는 2020. 10. 14.부터 자막 방

영하고 있음. 약 10일간의 시간차를 두고 일본과 한국에서 방송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내용 중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블로거가 자막을 직접 제작해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저작물은 일본에서 2020. 10. 24. 17:30 방영했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지 방영 5시간 뒤에 게시되었음. 해당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약 10일 뒤인 2020. 11. 4. 22:00 정식 방영됨.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애니메이션 대본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음. 원 저작물 전체 분량의 자막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유형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보다는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임.

(공정이용 판단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함)

자막 관련 해외 사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를 설명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전송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그 자체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자막 파일을 제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이 필요하고, 또한 자막파일과 불법복제 영상물이 서로 결합하여 해당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

으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박성호 위원장: 본 안건은 2020. 11. 10. 개최한 제2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주었음.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께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검토보고서 20쪽의 각주 15번 내용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부결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자막파일이 무료로 제공되어 영리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인이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시정권고를 부결했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요소 중 자막파일이 smi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불법영상물과 결합되기 때문에 불법영상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용이하게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며 블로거가 직접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직접 번역 및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렸음. 이런 사항은 소극적 요소로 볼 수 있음.
반면 자막을 smi파일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법복제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을 조장할 여지가 있음.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사부분만 번역한 것이고 애니메이션 영상물은 게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에 걸쳐있는 사안으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내용 공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를 직접 보면서)블로그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에 광고는 게재되어 있지 않음. 해당 블로그에 2003년부터 자막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인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을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 마니아로서 자막을 제작해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자막파일을 삭제 조치해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과 원본 자막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됨.

자막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과 심의대상 게시물인 자막파일을 결합하면 자막을 볼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동일한 폴더 안의 영상 저작물의 파일명과 자막 파일명이 같으면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영상을 재생하면 자막이 자동으로 영상과 함께 제공됨.

다만, 특정 불법복제 영상에 맞춰 자막을 만들면 해당 영상의 싱크에 맞춰지므로 특정 불법복제 영상이 있어야 영상과 자막이 일치함.

- G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자막 유무에 따라 불법복제 영상이 확산되는 파급력에 차이가 있음. 자막이 불법복제 영상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함.
- A 위원: 지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부결했던 안건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었고 금번 심의대상 안건은 smi형태의 파일인데 단순 텍스트 파일도 불법영상물하고 싱크하기 쉬운지?
- F 위원: smi파일과 srt파일 모두 텍스트 파일임. 파일을 구분할 때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로 나눌 수 있음. smi파일과 srt파일도 텍스트 파일이지만 영상을 재생했을 때 영상에 맞춰서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헤드가 붙어있는 것임.
- A 위원: 텍스트 파일이라는 용어 속에 smi와 srt가 아닌 일반 텍스트 파일도 포함될 수 있는지?
- H 위원: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파일과 영상 저작물을 결합해서 이용할 수 없음.
smi와 srt는 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대사가 출력되도록 싱크를 맞추는 언어를 사용해서 영상과 결합했을 때 자막을 볼 수 있는 것임.
텍스트 파일을 사용목적상 구분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막 파일임.

- D 위원: 텍스트는 어문저작물이고 smi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지?
- H 위원: 텍스트에 싱크가 없다면 일반 문서 파일이고 싱크가 있다면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용 텍스트 파일임.
- I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과 한국 공식 채널에서 방영한 영상의 자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두 자막을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나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F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2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막이 영상 화면에 맞춰 나올 수 있게 하는 태그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블로거가 자막파일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자막파일을 직접 만든 것임.
- H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일본 방송 5시간 뒤에 번역하고 자막을 제작해 블로그에 smi파일을 게시하였음. 일본어 원본 자막이 없었다면 블로거가 일본어 대사와 본인이 번역한 대사를 smi파일로 제작한 다음 싱크를 맞춘 것임. 2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이지만 5시간 만에 자막을 제작해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 F 위원: 자막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번역만 빠르다면 영상을 재생하면서 바로 싱크를 맞출 수 있음.

- H 위원: 산업적인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의 일본 방영일과 한국 방영일이 10일의 차이가 발생하고 국내 방송일 전에 자막이 블로그에 게시된 것임.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거나 언제 수입될지 알 수 없어서 자막파일을 만드는 경우 또는 PDF로 대본을 공유하는 정도라면 비영리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 방영일 전에 게시한 것은 불법복제 영상과 결합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에서 어떻게 영상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볼 수 있음.
 그런 측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 방영일 전에 자막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함. 해당 안건은 자유롭게 표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 안건번호 제2020-1625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가결: D, G, H, J, K, L, M, O, P위원 / 부결: A, B, E, I, N, Q 위원 / 기권: C, F 위원)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2509호, 16251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또 해당 건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아야 할 것임. 예컨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제27조의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임. 법 제27조 다만 이하에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
시하고 있음.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무단전재를 금한다는 내용의
워터마크를 붙이고 있음.

언론사들은 기자나 사진기사가 작성한 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서 회
사에 귀속시키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안
건은 기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안임. 물론 민원인이 저작자일 것이
저작권보호심의 요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특성도 고려되어
야 할 것임.

- A 위원: 분과위에서 해당 안건이 시정권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는 논의되었는지 궁금함.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상
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앞의 모든 쟁점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더라도 한정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본
안건이 시정권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 K 위원: 저작권보호심의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조직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권리자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
기 위함임.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취지라면 이 문제는 제도 도입 취
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한 안건은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민원인이 신고한 건은 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민원인이 신고한 건은 대량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 이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것임.

- A 위원: 기존에 심의위원회는 민원인 신고 건, 모니터링 건을 불문하고 우리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부결하자는 입장이었음. 민원인이 신고한 건이라고 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가결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은 직접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고 취재를 한 것인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굳이 현장에 가지 않고 ■■■■■의 영상을 캡처해서 기사 작성에 활용한 것임. 만약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금번 심의 대상 게시물의 경우에는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임.
- F 위원: 언론의 자유는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보임. 해당 사안에 대해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면 금번 심의에서 논의가 된 사진 외에도, 해당 언론사에서 직접 작성한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함께 삭제되는 결과가 나타남.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L 위원: 기사 소재 자체가 다른 언론사에서 베껴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쟁점이 있는 것이어서 본 사안에 대해 묵과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함. 언론 기사나 사진의 수요가 있는데 시정권고 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의문이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중에 언론 자율 감시기구의 심의 등 별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업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본 건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겠지만 기사의 선후관계가 명확해 보이고 침해인 것도 명백해서 언론 자율 감시기구에 넘기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한편 검토보고서의 편제의 문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의의 내용과 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M 위원: L 위원 의견에 동의함. 언론의 자유를 고려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음. 본 건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기사라고 생각함.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낀 사안을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내버려 두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임.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별개로 처리하더라도 이 사안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파악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G 위원: 이 사안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과연 이 사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인가 하는 것이었음. 심의를 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

이 원저작물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을 고려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파급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진이 메인인지, 기사가 메인인지 고민하게 됨.

본 건의 경우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보다도 개인적 권리 구제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떠나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함.

- C 위원: 저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진에 대한 출처를 인용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함. □□□□□이 ●●●●에서 해당 기사를 참조하면서, ■■■■■이 아닌 ●●●●에서 가져온 것으로 표기함. ●●●●는 이용자의 흡수성이 큰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민원인은 인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N 위원: 해당 기사가 ■■■■■의 특종기사였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특종기사는 아님.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래 기사와도 다른 내용임.
- 오진해 전문위원: 원래 기사 내용은 크게 화젯거리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함.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강연의 안내 기사임.
- N 위원: ■■■■■의 특종기사여서 이런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신고 자체가 이례적인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원기사는 기자가 직접 가서 강연을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해 기사를 쓴 것임. 민원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본인이 원래 쓴 기사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취지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임.

만약 □□□□□ 기자가 강연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한 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다면 악의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N 위원: □□□□□은 ●●●●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 기사를 베낀다는 인식은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 정도는 공정이용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음.

저작권법 제26조에 대해서도 검토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26조는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시사 보도 중의 부수적 복제등에 대한 조항으로 해당 안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박성호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했고, 그러한 점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보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대로 시정권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 확산이 대량적이고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진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162509호, 1625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가결: C, J, L, M, O, 위원 / 부결: A, B, D, E, F, G, H, I, K, N, P, Q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62508호~16251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3쪽부터 2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중복 청구된 80개 계정과 폐쇄된 온라인서비스의 6개 계정은 부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82개 계

정에 대해 12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6쪽부터 4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3646호~3649호, 3652호, 3653호, 제2020-3656호~3663호, 제2020-3670호~3673호, 제2020-3682호, 3683호, 3686호, 제2020-3688호~3690호, 제2020-3693호~3696호, 제2020-3698호~3700호, 제2020-3703호~3705호, 3710호, 3715호, 3721호, 3722호, 제2020-3725호~3727호, 3729호, 3731호, 3732호 44개 안전 중 44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4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개 안전(13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제4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박성호 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정성희 사무처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음.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규정 제8조는 제목 중 오기가 있으며, 제13조 제3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보고를 마치겠음.

- A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원과 연임에 대한 사항이 법과 내부규정이 일치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함. 제8조의 제목에 대한 오기는 수정되어야 함.

제13조 제3항은 검토보고서에는 ‘사무처장 임명 시’로 되어있으나 현재 규정에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사무처 직원’도 포함하여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의 임명 시’로 수정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은 ‘제13조 제3항’은 수정하고 제4조, 제5호, 제8조는 원안대로 가결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제13조 제3항은 ‘사무처장 임명 시’를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의 임명 시’로 수정하여 가결함.”

5. 논의안건

○ 제1호: 반복침해자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방안

- 오진해 전문위원: (논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민원인 신고 및 보호

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심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여 시정권고를 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에 대하여는 계정정지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안을 검토 후 보호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 조치된 사례는 없음.

2020. 11. 26. 개최한 제4분과위원회에서 반복침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반복되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경고의 시정권고에서 나아가 게시판 정지 및 포털 이용자에 대한 계정정지 방안, 보호원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 제21조에 의한 수사요청의 권고 등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 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논의안건으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본 안건은 2020. 11. 26. 개최한 제4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음. 제4분과위원회 위원님께서 전체위원회에 논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L 위원: 시정권고 심의를 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블로그에 수많은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 분과위원회에는 그 중 1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

시정권고 심의를 하다보면 블로그에 수많은 불법복제물이 반복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된 것을 확인하게 됨. 수많은 불법복제물 중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게시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임.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반복침해자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논의안건으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A 위원: 반복침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권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는지?
- L 위원: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대한 민원 신고 건 외에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시정조치를 권고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게시판 정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고발조치 등이 있을 것임.
- I 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적자원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와 온라인대응팀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임.
- 정성희 사무처장: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에 대해 심의할 때 반복침해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온라인대응팀에 전달하여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하겠음.

- M 위원: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라도 계정정지를 하면 보호원의 큰 성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음.
포털 사이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보호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G 위원: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과 서비스 계정의 분리는 불가능한지?
- 정성희 사무처장: 포털 사이트 담당자와 계정정지 관련하여 협의하였음. 포털에서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분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다만, 게시판 정지는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으나 저작권법상 게시판 정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의 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를 요청해야 함.
- G 위원: 게시판 정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김좌현 온라인대응팀장: 포털사에서는 블로그 서비스에 대해 중지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임.
- M 위원: 포털의 내부 약관,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외부 요청에 의한 제재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 G 위원: 법문에서의 계정정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지? 계정의 일부 활동을 정지한다는 것이 포털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으로 접근제한의 의미와 비슷할 것임. 계정정지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계정정지를 못하게 됨.

- F 위원: 포털사이트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정정지라고 하니까 포털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해 전부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임.

하지만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올라갈 경우에는 포털 내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메일 계정과 분리해서 계정정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G 위원: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계정의 일부 정지로 포함하면 될 것임. 계정정지가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F 위원: 계정에 대한 특정 서비스 정지 요청이 정확한 용어임.

- A 위원: F 위원님 말씀은 보호원과 포털사 간 업무를 협의할 때 의견의 오해로 인해 포털사에서 이메일 계정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 F 위원: 계정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메일 계정을 정지한다는 말과 동일함. 기술적으로 특정 계정에 해당하는 특정 서비스를 중지시켜달라고 하면 포털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예를 들면 밴드 또는

블로그에 대해 정지해달라고 하면 됨.

- A 위원: G 위원님 말씀처럼 계정정지를 포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됨.

- G 위원: 포털사의 이용 약관을 보면 서비스별로 분리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법문의 계정정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함.

- A 위원: 법문의 계정정지가 포괄적이라고 하면 그 중 일부 특정한 서비스를 계정정지하는 것은 그 안에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정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F 위원: 포털사에서 처음 구축한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 그 후에 나온 밴드 등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정정지할 수 있음.

- A 위원: '포털사이트 계정 정지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포털사이트 계정 정지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

구해보는 것으로 결정함.

o 제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제척사유 당사자 포함여부

- 오진해 전문위원: (논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법 시행령 제 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심의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안건 심의에 대하여, 제척사유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로 각 저작물의 주요 권리자사를 고지하고, 위 시행령 및 규정상의 제척사유 중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및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확인한 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2020. 11. 26. 개최한 제4분과위원회에서 위 ‘당사자’에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또한 공정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척사유 고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제척은 위원이 구체적인 안건과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 또는 안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임.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에 있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제척사유에 있어서의 당사자로 보고 사전 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피해저작물의 보호필요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제3호에 의하여 동일·유사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이력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시정권고 이력’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2020. 2. 26.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020-2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명령 심의안건에서는, 정보제공청구명령의 대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제4호의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회피하였던 바 있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소속한 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에 있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제척사유에 있어서의 당사자로 보고 사전 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안건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L 위원: 논의 안건을 제안해 주신 K 위원님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음. 현재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권리자사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지하고 있지 않음. 일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량으로 시정권고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리하고 있

거나 친인척 관계라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제척사유에 포함되는 당사자 고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를 심의하면서 개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일부 쟁점이 되는 민원 건을 제외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인지 여부만 판단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음.
- A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제척사유의 당사자에 포함시켜 시정권고 검토를 하면서 업무 과중이 초래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 H 위원: 제척사유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검토보고서 앞면 요약부분에 심의안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모두 기재하고 있음. 그 부분에 있어 업무과중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위원님들께서 요약부분을 상세히 확인해 주시면 될 것임.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당사자에 포함시켜 제척사유를 고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시정권고 심의 회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당사자에 포함시켜 제척사유를 고지하는 것으로 정리함.

6. 폐회 선언

○ 박성호 위원장이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04. 01.

위원장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김연희

위원 김택수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윤종수

위원 임형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홍지만